

남양주시 고시 제2026-91호

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, 관광휴영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1.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산18-1번지 일원에 체육시설(골프장)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,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3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6. 03. 05.

남 양 주 시 장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①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용도지구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(%)		비고
		기정	증감	변경	기정	변경	
계		2,044,270	—	2,044,270	100.0	100.0	
관리 지역	소계	1,712,053	증) 332,217	2,044,270	83.7	100.0	
	보전관리지역	1,500,473	감) 826,102	674,371	73.4	33.0	
	생산관리지역	203,025	감) 203,025	—	9.9		
	계획관리지역	8,555	증) 1,361,344	1,369,899	0.4	67.0	
농림지역		332,217	감) 332,217	—	16.3		

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합계		—	—	2,035,715	—	—
1	수동면내방리 산18-1	보전 관리지역	소계	1,500,473	—	토지이용 효율성제고 및 유희 임야 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 제발전, 건전한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52조에 따라 (관광·휴양형)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 수 립을 위해 사업부지 내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 역 및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 경하고자 함
			계획관리지역	1,128,773	100.0	
			보전관리지역	371,700	—	
2	수동면내방리 135	생산 관리지역	소계	203,025	—	
			계획관리지역	200,241	100.0	
			보전관리지역	2,784	—	
3	수동면내방리 산18-1	농림지역	소계	332,217	—	
			계획관리지역	32,330	100.0	
			보전관리지역	299,887	—	

나.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

1)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제한내용	면적(m ²)	최종 결정일	비고
신설	1	내방 개발진흥지구	관광 휴양형	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산18-1 일원	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	2,044,270	-	

2) 개발진흥지구 결정 사유서

도면 번호	지구명	계획 내용	결정(변경) 사유서
1	내방 개발진흥 지구	○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산18-1번지 일원 ○ 면 적 : 2,044,270m² ○ 지구의 세분 :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	유휴 임야 지역 개발을 통하여 지역 경제발전, 건전한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본 신청부지에 체육시설(골프장)과 연계된 관광휴양시설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도지구를 관광·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고자 함

②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도면 번호	구역명	구역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1	내방지구	관광 휴양형	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산18-1번지 일원	-	증) 2,044,270	2,044,270	

2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도면 번호	위치	결정내용	결정사유
1	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산18-1번지 일원	○ 구역 : 신설 ○ 시설 : 관광휴양시설, 체육시설 (골프장) ○ 면적 : 2,044,270m²	관광휴양시설 및 체육시설(골프장)을 계획적으로 개발·관리하기 위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	비고
			획지 번호	위치	면적(㎡)	
총계		2,044,270	—	—	2,044,270	
—	A	1,280,333	1	수동면 내방리 산18-1번지 일원	1,280,333	골프장 및 부대시설
—	B	82,342	1	수동면 내방리 195번지 일원	82,342	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 및 부대시설
—	C	7,224	1	수동면 내방리 194-5번지 일원	7,224	진입도로
—	D	674,371	1	수동면 내방리 산18-1번지 일원	646,933	원형녹지
			2	수동면 내방리 129번지 일원	12,338	
			3	수동면 내방리 산18-10번지 일원	3,293	
			4	수동면 내방리 산18-1번지 일원	11,807	
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도면 번호	위치	구 분	계획내용
A-1	수동면 내방리 산18-1번지 일원	용도	○ 지정용도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에 의한 골프장시설, 동법 제10조에 의한 골프장업을 위 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용도 ○ 불허용도 : 지정용도 외 시설
		건폐율	40% 이하
		용적률	100% 이하
		높이	지하1층~4층 이하
		배치	—
		형태	—
		색채	—
		건축선	—
B-1	수동면 내방리 195번 일원	용도	○ 지정용도 :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 및 그 부속시설 용도 ○ 불허용도 : 지정용도 외 시설
		건폐율	40% 이하
		용적률	100% 이하
		높이	지하1층~4층 이하
		배치	—
		형태	—
		색채	—
		건축선	—